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0년마다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과 공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입법부의 권한이 제한되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2호, ‘23. 10. 31. 공포, ‘24.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표 절차 마련(안 제3조 신설)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 공표하는 절차를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표)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표)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백 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 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 법으로 공표해야 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연 락 처	(042) 481 - 8814